

“搜查能率提高 方案”

宋 海 俊*

〈目 次〉

I. 序 論	3. 搜查費의 不足
1. 研究目的	4. 前近代의인 搜查裝備
2. 研究의 範圍와 方法	IV. 搜查能率提高를 爲해 改善되어야할 事項
II. 犯罪趨勢와 展望	1. 警察에 獨自의 搜查權 保障
1. 交通法規 違反事犯의 急增	2. 搜查專門人力의 確保
2. 靑少年犯罪의 粗暴化	3. 搜查費의 現實化
3. 前科者의 再犯 增加	4. 搜查裝備의 現代化
4. 都市犯罪의 增加	5. 搜查의 科學化
5. 國際性 犯罪의 增加	6. 搜查警察의 士氣昂揚
III. 搜查能率 沮害要因	7. 住民協助體制의 構築
1. 現行 搜查制度의 不合理	V. 結 語
2. 搜查專門人力의 不足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오늘날 人口는 날로 증가하고 經濟의 비약적 성장으로 사회는 급변하고 있으며 都市化와 産業化 現象은 우리들의 生活習慣과 人間의 價値觀마저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因해 犯罪 樣相 또한 크게 변화하고 있다. 犯罪는 해마다 量的으로 增加

* 警察大 教授部長

하고 質的으로도 고도로 組織化, 兇惡化, 廣域化, 機動化, 年少化되어 가고 있으며 犯罪手法 또한 교묘하여 犯人檢擧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搜查技術과 裝備 등 犯罪對應 能力은 스피드화되어 가고 있는 犯罪를 쫓아가지 못하고 前近代의인 水準을 벗어나지 못하여 이로 인해 국민들은 犯罪로부터의 恐怖感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증가되는 犯罪의 恐怖로부터 벗어나 국민들이 마음놓고 생활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警察의 任務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警察公務員法에서도 “警察官은 國民의 生命, 身體 및 財產의 保護와 犯罪의 豫防과 鎮壓 및 搜查와 交通의 團束, 消防 기타 公共의 安寧과 秩序維持를 그 職務로 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警察官職務執行法은 警察官의 職務가 “國民의 自由와 權利의 保護 및 社會公共의 秩序維持에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그 職務의 具體的인 內容을 다섯가지로 열거하면서 犯罪의 豫防·鎮壓 및 搜查를 첫번째로 꼽고 있다.

본 論文은 바로 警察이 수행하고 있는 여러 機能中에서도 一般國民들이 警察의 機能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犯罪의 統制機能을 중심으로, 現시점에서 搜查의 效率性을 阻害하는 原因을 分析하고 이에 대한 對處方案을 마련하여 效率的인 搜查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研究의 目的이 있다.

2. 研究의 範圍와 方法

搜查란 犯罪의 嫌疑有無를 明白히 하여 公訴의 提議與否를 決定하기 위하여 犯人을 發見·確保하고 證據를 蒐集保全하는 搜查機關의 活動을 말한다. 搜查機關은 檢事와 司法警察 官吏가 있고 司法警察 官吏는 다시 一般司法警察 官吏와 特別司法警察 官吏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本研究에서는 搜查의 主된 機關이라고 할 수 있는 一般 搜查警察만을 對象으로 했다. 그리고 搜查의 能率을 提高시키기 위한 方案에는 보는 視角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方案이 나올 수도 있다. 또 搜查의 能率을 沮害시키는 要因과 能率을 提高시키는 方案을 빠짐없이 分析하고 또한 深度있게 對策을 講究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방대한 작업을 요하는 課題이기 때문에 本研究에서는 最近의 犯罪趨勢와 그 特徵을 分析해 본 다음 搜查의 能率을 沮害하는 要因들을 簡單히 살펴보고 이에 對한 基本的인 對策을 提示하는데 그치고져 한다.

그리고 研究方法은 實務面에 對한 考察은 犯罪가 많이 發生하고 新種 犯罪를 찾아 볼 수 있는 서울警察局을 對象으로 했고 制度面에 對한 分析은 主로 外國의 搜查制度和 우리나라의 搜查制度를 比較分析하는데 力點을 두었다.

이를 위해 國內外의 學術書籍과 研究論文等을 參考로 하였으며 治安本部에서 發給되는 各種 統計와 公文, 그리고 筆者가 25年間 警察에 在職하면서 얻은 實務經驗 등을 參考로 하였다.

II. 犯罪趨勢와 展望

60年代初부터 始作된 産業化와 都市와 現象은 우리社會에 豊요를 갖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國民들의 生活樣式과 意識構造마저 變化시켜 놓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現象은 犯罪에도 影響을 주어 犯罪의 手法과 質, 量의 面에도 큰 變化를 가져오고 있다.

아래의 <表1>에서 보듯이 總犯罪는 '78년부터 '87년까지 10年間 年平均 7.4%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으며 人口增加率 年平均 1.6%보다 5.8%가 높은 實情이다.

여러가지 다른 方案이 나올 수도 있다. 또 搜查의 能率을 沮害시키는 要因과 能率을 提高시키는 方案을 빠짐없이 分析하고 또한 深度있게 對策을 講究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방대한 작업을 요하는 課題이기 때문에 本研究에서는 最近의 犯罪趨勢와 그 特徵을 分析해 본 다음 搜查의 能率을 沮害하는 要因들을 簡單히 살펴보고 이에 對한 基本的인 對策을 提示하는데 그치고져 한다.

그리고 研究方法은 實務面에 對한 考察은 犯罪가 많이 發生하고 新種 犯罪를 찾아 볼 수 있는 서울警察局을 對象으로 했고 制度面에 對한 分析은 主로 外國의 搜查制度和 우리나라의 搜查制度를 比較分析하는데 力點을 두었다.

이를 위해 國內外의 學術書籍과 研究論文等을 參考로 하였으며 治安本部에서 發給되는 各種 統計와 公文, 그리고 筆者가 25年間 警察에 在職하면서 얻은 實務經驗 등을 參考로 하였다.

II. 犯罪趨勢와 展望

60年代初부터 始作된 産業化와 都市와 現象은 우리社會에 豊요를 갖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國民들의 生活樣式과 意識構造마저 變化시켜 놓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現象은 犯罪에도 影響을 주어 犯罪의 手法과 質, 量의 面에도 큰 變化를 가져오고 있다.

아래의 <表1>에서 보듯이 總犯罪는 '78년부터 '87년까지 10年間 年平均 7.4%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으며 人口增加率 年平均 1.6%보다 5.8%가 높은 實情이다.

<表1>

年度別 總犯罪 增減率

人口單位：千名

區分 \ 年度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犯罪發生件數	509,300	563,999	620,710	631,950	655,183	786,939	784,708	794,777	818,718	902,764
前年對比率	100	10.7	10.1	1.8	3.7	20.1	-0.3	1.3	3.0	10.3
人口數	36,969	37,534	38,124	38,312	39,331	39,670	40,430	40,467	41,161	42,015
前年對比率	100	1.5	1.6	0.5	2.7	0.9	1.9	0.1	1.7	2.1

資料：治安本部, 犯罪分析, 1978 ~ 1987 年에 依據 再作成

또한 犯罪의 內容面을 보더라도 60年初에는 別문제가 되지않고 있던 靑少年 犯罪, 都市犯罪, 交通法規違反事犯 등이 커다란 社會問題로 登場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犯罪 變化趨勢는 앞으로도 社會變遷에 따라 繼續 變化할 것이다.

그리고 犯罪對策을 樹立함에 있어 社會環境 變化에 따른 犯罪의 趨勢를 豫測해 보는 것은 매우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최근 10년간의 犯罪趨勢를 分析하여 그 重要한 特徵을 몇가지로 요약해 보기로 한다.

1. 交通法規 違反事犯의 急增

우리나라의 交通法規 違反事犯은 70年代까지도 社會적으로 別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80年代 들어서부터 産業이 漸次 發展하고 交通人口가 增加됨에 따라 交通問題가 커다란 社會問題로 擡頭하기 시작했다.

交通法規 違反事犯의 增加는 아래의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0年間('78 ~ '87) 平均 17.2%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으며 特히 '87年度에는 總 291,526 件이 發生하여 10年前인 78年度 82,085 件에 比하여 무려 224.93%가 增加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추세는 道路與件과 國民들의 意識構造 改善이 뒤따라지 않는 限 앞으로도 繼續 增加될 展望이다.

〈表2〉 交通關係 法規違反事犯의 增加趨勢

區分 \ 年度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發生件數	82,085	133,637	118,256	117,091	130,209	160,809	176,193	163,419	219,383	291,526
增 減 率	100	+62.8	-11.5	-1.0	+11.2	+23.5	+9.6	-7.3	+34.2	+32.9

※ 資料：治安本部，犯罪分析，1978～1987 年에 依據 再作成

註：交通事犯은 交通事故特例法 違反事犯과 道路交通法 違反事犯을 稱함.

2. 青少年 犯罪의 粗暴化

青少年 犯罪은 〈表3〉, 〈表4〉에서 보는 바와 같이 '78 年부터 '83 年까지는 年平均 10.3%의 增加 趨勢를 보여 오다가 '84 年 以後부터는 增減을 反復하고 있는 趨勢이며 少年犯罪의 總犯罪에 對한 構成比는 '87 年度의 경우 總犯罪의 9.0% 로서 해마다 減少되고 있어 다행스러운나 重要犯罪의 構成比를 보면 強盜가 總犯罪의 50.5%, 竊盜가 47.9%, 強姦이 36.5%로 強·竊盜犯의 大部分이 青少年 들에 依해 犯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青少年들의 年齡別 犯罪統計를 보면 刑法犯의 79.6%가 16 歲~17 歲사이의 年齡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青少年 犯罪은 날로 年少化·粗暴化 되어가고 있다.

〈表3〉 青少年犯罪 發生狀況

區分 \ 年度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總 被 疑 者	545,433	594,204	649,922	664,205	720,908	808,911	817,315	822,498	850,196	926,709
少年被疑者	60,365	59,975	65,469	69,549	86,347	97,124	90,178	85,805	86,230	83,842
少年犯增加 增 減 率	100	-0.6	+9.2	+6.2	+24.2	+12.5	-7.2	-4.8	+0.5	-2.8
構 成 比	11.1	10.1	10.1	10.5	12.0	12.0	11.0	10.4	10.1	9.0

※ 資料：〈表1〉과 同一

〈表4〉 重要青少年犯罪 構成比率

年度別 區分 罪種別	'86			'87		
	少年犯罪	總犯罪	構成比	少年犯罪	總犯罪	構成比
殺人犯	84	599	14.0	92	596	15.4
強盜犯	2,236	4,185	53.4	1,994	3,947	50.5
強姦犯	2,207	5,158	42.8	1,661	4,553	36.5
放火犯	45	477	9.4	35	461	7.6
竊盜犯	29,445	61,463	47.9	27,622	57,705	47.9
暴力犯	39,328	244,846	16.1	38,936	261,098	14.9

※ 資料：治安本部, 犯罪分析, 1987.

한편 青少年 犯罪의 動機를 統計에 依해 分析해 보면 生活費充當, 遊興費調達 등 利慾에 의한 犯罪도 많으나(全體의 19.5%) 偶發的인 犯罪가 全體 犯罪의 55.9%로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統計의 數値는 青少年 犯罪가 家庭 및 社會環境과도 密接한 關係가 있으나 그보다도 青少年들의 道德意識과 犯罪制禦能力의 缺乏 등에서 오는 것이 많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青少年 犯罪를 減少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家庭教育과 學校教育을 通해 道德心과 忍耐力을 培養시키는 데 力點을 두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3. 前科者의 再犯增加

〈表5〉에 나타나 있듯이 總被疑者 926,709名中 44.2%에 該當하는 409,153名이 前科者들이다. 特히 〈表6〉을 보면 強盜의 경우는 50.1%, 殺人의 경우는 51.0%가 前科者들에 依해 犯行이 이루어졌고, 暴力犯도 44.1%가 前科者들에 依해 犯해졌다. 그리고 前科者 409,153名에 對한 犯罪回數를 보면 前科 1犯에 該當하는 者가 全體의 36.9%인 151,051名이고, 前科 9犯 以上이 4.1%에 該當하는 16,573名이다.

〈表5〉 前科者 再犯狀況

年度 區分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總被疑者	545,433	594,204	649,922	664,205	720,908	808,911	817,315	822,498	850,196	926,709
前科者	121,876	147,649	193,715	242,372	286,547	307,218	333,863	350,454	362,658	409,153
前科者 增減率	100	+21.1	+31.2	+25.1	+18.2	+7.2	+10.3	+3.4	+3.5	+12.8
構成比	22.3	24.8	29.8	36.5	39.7	38.0	41.5	42.6	43.7	44.2

※ 資料：〈表1〉과 同一

註：'87 治安本部 犯罪分析

〈表6〉 重要罪種別 前科者 構成比率

'87 年度

區分 罪種別	總被疑者	前科者	構成比
強盜犯	3,947	1,977	50.1 %
殺人犯	596	304	51.0 %
暴力犯	261,098	115,214	44.1 %
竊盜犯	57,705	21,700	37.6 %

※ 資料：治安本部, 犯罪分析, '87 年에 依據 再作成

이와 같이 被疑者中 前科者의 構成比가 높고 또 矯導所에 여러번 갔다 온 犯罪者들이 再犯을 서슴치 않고 行하는 것은 矯導行政面에 있어서도 問題가 있다고 생각되나 그보다도 犯罪行爲에 對한 刑이 大部分 自由刑에 屬하므로 刑罰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原因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刑量을 強化하지 않는 限 前科者들에 依한 犯罪는 繼續 增加될 것으로 豫測되며 特히 罪意識이 희박한 靑少年들에 依한 組織犯罪는 더욱 增加될 것으로 展望된다.

4. 都市犯罪의 增加

'87年度 6大都市(서울·釜山·大邱·仁川·光州·大田)에서 發生된 犯罪件數는 總 487,252 件으로 이는 全國總犯罪件數 902,764 의 54.0%에 該當하는 件數로 이는 人口分布率에 比해 8.0%나 높은 數值이며 犯罪率로 보면 6大都市는 2,519 其他地域은 1,883 으로 6大都市가 其他地域에 比해 훨씬 높다.

〈表7〉 都市犯罪發生狀況 '87年度

地域別 區分	總犯罪	6 大 都 市							其他地域
		小計	서울	釜山	大邱	仁川	光州	大田	
發生件數	902,764	487,252	273,020	89,310	48,806	31,007	24,160	20,949	415,512
構成比	100.0	54.0	30.2	9.9	5.4	3.4	2.7	2.3	46.0
犯罪率	2,149	2,519	2,733	2,444	2,253	2,031	2,224	2,272	1,833

※ 資料：治安本部, 犯罪分析, 1987.

이와 같은 統計의 數値는 人口의 大都市 集中化에 따른 여러가지 社會問題와 더불어 都市犯罪의 深刻性을 證明해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特別한 措置가 없는 限 위 統計에서 보는 바와 같이 都市犯罪는 繼續 增加될 展望이다.

5. 國際性 犯罪의 增加

오늘의 世代를 가르쳐 國際化時代라고 부른다. 이것은 國際貿易增大·觀光·移民·各種 國際行事 등의 激增으로 國際間의 交流가 增加되고 앞으로는 國際間의 協力없이는 地球上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되어감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國際化 現象은 必然的으로 國際性 犯罪를 發生시키기 마련이다.

最近 우리社會에 나타나고 있는 國際性 犯罪의 類型을 보면 國際테러, 航空機 拉致, 國際詐欺, 關稅法違反, 密輸 등 多樣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더 國際性 犯罪가 增加될 것으로 展望된다. 따라서 搜查當局은 인터폴을 통한 國際協力

強化 등 國際性 犯罪에 對한 對策이 要請된다.

Ⅲ. 搜查能率 沮害要因

1. 現行 搜查制度의 不合理

가. 우리나라의 司法警察制度

우리나라는 檢事가 犯罪搜查의 主宰者이고 司法警察官吏는 補助的인 地位에 있다. 刑事訴訟法 第 195 條에는 檢査는 犯罪의 혐의가 있다고 思料될 때에는 犯人, 犯罪事實과 證據를 蒐集하여야 한다고 規定하여 犯罪搜查의 主體가 檢事임을 明示하고 있으며, 또한 同法 第 196 條에는 司法警察官은 檢事の 指揮를 받아 搜查를 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 밖에 司法制度에 관한 關係法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憲法 第 12 條 3 項〉

逮捕, 拘束, 押手, 搜索에는 檢事の 申請에 依하여 法官이 發付한 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の 경우와 長期 3 年 以上の 刑에 該當하는 罪를 犯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念慮가 있을 때에는 事後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라고 規定하여 司法警察은 檢事の 經由없이는 直接 法官에게 令狀을 請求할 수 없도록 制度化하고 있다.

〈刑事訴訟法〉

第 198 條의 2 (檢事の 拘束場所監察)

地方檢察廳 檢事長 또는 支廳長은 不法拘束의 有無를 調査하기 위하여 檢事로 하여금 每月 1 回 以上 管下 警察局, 警察署의 被疑者 拘束場所를 監察하게 하여야 한다고 規定하여 檢事の 司法警察에 對한 監督權을 附與하고 있다.

第 210 條 (司法警察官吏의 管轄區域外의 搜查)

司法警察官吏가 管轄區域外에서 搜查하거나 管轄區域外의 司法警察官吏의 囑

強化 등 國際性 犯罪에 對한 對策이 要請된다.

Ⅲ. 搜查能率 沮害要因

1. 現行 搜查制度의 不合理

가. 우리나라의 司法警察制度

우리나라는 檢事가 犯罪搜查의 主宰者이고 司法警察官吏는 補助的인 地位에 있다. 刑事訴訟法 第 195 條에는 檢査는 犯罪의 혐의가 있다고 思料될 때에는 犯人, 犯罪事實과 證據를 蒐集하여야 한다고 規定하여 犯罪搜查의 主體가 檢事임을 明示하고 있으며, 또한 同法 第 196 條에는 司法警察官은 檢事の 指揮를 받아 搜查를 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 밖에 司法制度에 관한 關係法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憲法 第 12 條 3 項〉

逮捕, 拘束, 押手, 搜索에는 檢事の 申請에 依하여 法官이 發付한 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の 경우와 長期 3 年 以上の 刑에 該當하는 罪를 犯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念慮가 있을 때에는 事後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라고 規定하여 司法警察은 檢事の 經由없이는 直接 法官에게 令狀을 請求할 수 없도록 制度化하고 있다.

〈刑事訴訟法〉

第 198 條의 2 (檢事の 拘束場所監察)

地方檢察廳 檢事長 또는 支廳長은 不法拘束의 有無를 調査하기 위하여 檢事로 하여금 每月 1 回 以上 管下 警察局, 警察署의 被疑者 拘束場所를 監察하게 하여야 한다고 規定하여 檢事の 司法警察에 對한 監督權을 附與하고 있다.

第 210 條(司法警察官吏의 管轄區域外의 搜查)

司法警察官吏가 管轄區域外에서 搜查하거나 管轄區域外의 司法警察官吏의 囑

託을 받아 搜查를 할 때에는 管轄地方 檢察廳 檢事長 또는 支廳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라고 規定하브로서 司法警察의 自由로운 搜查活動을 制限하고 있다.

第 312 條의 ②(司法警察官의 調書)

檢事 以外の 搜查機關이 作成한 被疑者 訊問調書는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 그 被疑者였던 被告人이나 辯護人이 그 內容을 認定할 때에 限하여 證據로 할 수 있다고 함으로서 司法警察官이 作成한 調書에 對한 證據能力을 制限하고 있다.

< 檢察廳法 >

第 4 條의 2(檢事の 職務)

檢事は 公益의 代表者로서 犯罪搜查에 關해 司法警察官吏를 指揮監督할 수 있다.

第 53 條(服從의 義務)

司法警察官吏는 犯罪搜查에 있어서 所管檢事が 職務上 發한 命令에 服從하여야 한다.

第 54 條(交替任用의 要求)

署長이 아닌 警正 以下の 司法警察官吏가 職務執行에 關하여 不當한 行爲를 하는 경우에는 地方檢察廳 檢事長은 當該事件의 搜查中止를 命令하고 任用權者에게 交替任用을 要求할 수 있다.

< 司法警察官 職務規則(法務部令) >

第 11 條(搜查事務報告)

第 11 條에는 司法警察官吏는 重要한 犯罪가 發生하였다고 認定할 경우에는 即時 管轄地方檢察廳 檢事長 또는 支廳長에게 報告하도록 義務化하고 있는 바 該當되는 犯罪는 아래와 같다.

- ① 內亂罪
- ② 外患의 罪
- ③ 國旗에 關한 罪
- ④ 國交에 關한 罪
- ⑤ 公安을 害하는 罪, 다만, 공무원 자격의 喪失되는 限外한다.

- ⑥ 爆發物에 關한 罪
- ⑦ 放火, 重火 및 業務上 失火의 罪
- ⑧ 交通放害의 罪
- ⑨ 通貨에 關한 罪
- ⑩ 殺人的 罪
- ⑪ 傷害致死罪, 暴行致死罪
- ⑫ 強盜의 罪
- ⑬ 國家保安法 및 反共法違反犯罪
- ⑭ 各種 選舉法 違反犯罪
- ⑮ 關稅法 違反犯罪
- ⑯ 重要한 租稅犯處罰法 違反犯罪
- ⑰ 公務員에 關한 罪
- ⑱ 軍事에 關한 罪
- ⑲ 辯護士 및 言論人에 關한 罪
- ⑳ 外國人에 關한 罪
- ㉑ 社會耳目을 淸만하거나 政府施策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犯罪
- ㉒ 地方檢察廳 檢事長 또는 支廳長이 指示한 事項 등

22 種을 明示하고 있다.

第 12 條(情報報告)

第 12 條에는 司法警察官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實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事實과 警察措置를 管轄地方檢察廳 檢事長 또는 支廳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① 騷擾의 發生 其他의 事由로 社會的 不安을 造成할 우려가 있을 때

② 政黨, 社會團體의 動向이 社會秩序에 影響을 미칠 憂慮가 있을 때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現行 刑事訴訟法은 檢事를 搜查의 主體로 하고 司法警察官吏에 對한 指揮權을 부여하고 있다.(法 第 195 條 第 196 條)

그리고 檢察廳法은 檢事에게 司法警察官吏에 對한 搜查 指揮監督權을 부여하고

(檢察廳法 第4條) 同時에 司法警察官吏는 所屬檢事의 職務上 發한 命令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規定하여(同 第53條) 上命下服 關係를 分明히 하고 있다.

그리고 檢事의 指揮命令權을 保障하기 위하여 署長아닌 警正 以下の 司法警察官吏에게 職務執行에 關하여 不當한 行위가 있을 때에는 地方檢察廳 檢事長은 當該事件의 搜查中止를 命하고 任命權者에게 그 替任을 要求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으며, 替任要求에 對해서 任命權者는 正當한 理由 없이는 拒否할 수 없도록 規定하고 있다.(同法 54條)

따라서 現行 搜查制度는 다음과 같은 不合理 點을 內包할 수 밖에 없다.

첫째, 現行法上 檢事が 搜查의 主體이기 때문에 檢事는 公訴提起業務 이외에 크고 작은 모든 搜查業務에 關與할 수 밖에 없으며 小數의 檢事が 年間 90萬件 以上 發生하는 犯罪事件의 搜查指揮와 公訴維持業務를 遂行하려 하니 自然히 搜查指揮業務는 소홀하게 되며 形式에 그칠 수 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搜查의 能率을 阻害하는 要因으로 作用될 수 있다.

둘째, 犯罪搜查에 對한 責任 所在가 法과 實際에 있어서 一致하지 않다는 點이다.

現行法上 搜查의 主體는 檢事이고 司法警察官吏는 檢事의 指揮를 받아 搜查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搜查에 對한 責任은 法上 檢事에게 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警察이 全體犯罪의 98% 이상을 處理하고 있기 때문에 犯人을 逮捕하지 못하거나 搜查過程에서 어떠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依例히 國民들은 그 責任을 檢事에게 묻지 않고 警察에게 돌리는 것이 常例로 되어 있다. 이것은 分明히 權限이 있는 곳에 責任이 따른다는 一般原則에도 크게 違背된다.

셋째, 警察에게 獨自의인 搜查權을 부여하지 않는 限 實際的인 警察中立化는 期待할 수 없다는 點이다.

그것은 警察이 실사 政治的 中立을 하기 위하여 機構上의 獨立을 하였다 하더라도 現行法上 警察은 檢事의 指揮를 받아 搜查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搜查業務에 關한 限 中立性이 保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네째, 現行搜查制度는 憲法의 基本原則인 權力分散 原則에 맞지 않다는 點이다.

그것은 檢事에게 搜查權과 起訴, 不起訴權을 모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權力을 남용하기 쉽고 또한 前述한 바와 같이 制限된 人員으로 搜查業務까지 하려하니 公判活動에 充實할 수가 없다.

다섯째, 警察에서 搜查를 完了한 事件을 檢察에서 再搜查를 함으로써 關係人들에게 必要 以上の 不便을 주게 되고 時間을 浪費하게 된다.

나. 外國의 搜查制度

各國의 司法警察制度는 그 歷史的 背景과 檢察制度의 差異에 따라 大陸法系와 英美法系로 나누어진다.

大陸法系 國家로는 獨逸과 프랑스 등이 代表的인 國家이며 이들 國家는 檢事가 公訴權을 가질뿐 아니라 搜查의 主宰者로서 司法警察을 그 補助者로 하여 指揮監督權을 갖는 것이 特徵이다. 그리고 英美法系 國家로는 美國, 英國 등 國家가 이에 屬하며 이들 國家에서는 檢事는 原則적으로 訴追機關으로서 搜查權은 補充적으로 行使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日本의 경우는 大陸法系와 英美法系의 混合型을 取하고 있으며 檢事와 司法警察은 各者 獨自의인 搜查權을 保有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區別은 어디까지나 法上 區別이지 實際에 있어서는 兩者가 상당히 接近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現實이다.

各國의 司法警察制度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英 國

英國¹⁾에서는 原則적으로 警察이 搜查權과 起訴權 및 公訴維持權을 統合하여 管掌하여 왔으며 다만 高度의 法律知識이 必要한 公判의 경우에는 民間辯護士(Solicitor)를 雇傭하여 公訴維持業務를 擔當케 하고 殺人, 反逆, 淫亂出版物, 國家安全에 反한 犯罪 등 重要犯罪에 對한 訴追權만을 檢察廳長(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이 行使했다.

그러나 1985년 王立檢察廳이 創設된 以後부터는 檢察이 警察의 公訴維持權을 引

1) 여기서의 英國은 英格蘭드와 웨일즈만을 칭함.

受行使하고 있으며 重要犯罪에 對한 警察의 報告도 義務化하고 있다.²⁾

② 美 國

美國은 前述한 바와 같이 搜查權은 警察에 있고 公訴權은 檢察이 行한다. 다만, 留意할 것은 美國은 50個 州와 聯邦이 各已 다른 固有한 刑法과 司法制度를 가지고 있다는 點이다. 다시 말하면 美國의 司法制度는 完全한 分權과 地域的 獨立性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特徵이라 하겠다.

聯邦의 경우 中央에는 聯邦檢察廳이 있고 聯邦地方裁判區에는 聯邦地方檢察官이 있다. 聯邦檢察總長은 大統領 및 行政 各省의 諮問에 應하고 最高法院에서의 公訴權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聯邦地方檢察官에 對한 一般的인 指揮監督權을 갖는다. 그리고 聯邦地方檢察官은 管轄內 政府 各機關에 對한 法律諮問의 地位를 가지며 行政上의 法律問題에 對하여 公訴提起權을 갖는다. 그리고 1917年부터는 聯邦法務長官인 聯邦檢察總長 傘下에 聯邦搜查局(FBI)을 設置하여 聯邦의 統一的인 犯罪을 搜查하고 있으며 聯邦檢察總長이 直接 指揮監督하고 있다. 聯邦搜查局은 全國 主要都市에 地方支部를 가진 尙大한 組織으로서 鑑識課, 科學試驗所 등을 가지고 있다.³⁾

③ 프 랑 스

프랑스는 大陸法系 國家이다. 따라서 檢事는 搜查의 主體者이고 司法警察官吏는 그의 補助機關으로서 檢事의 指揮監督을 받도록 法上 規定되어 있다. (刑事訴訟法 第41條 第74條) 司法警察官은 犯罪을 認知할 경우 지체없이 檢事에게 報告하여야 하며 搜查가 完了되면 檢事에게 事件을 送致하도록 義務化하고 있다. (刑事訴訟法 第19條)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司法警察은 檢事에 對한 報告義務는 거의 履行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重大하고 明白한 大規模事件 또는 미묘한 事件의 경우에 限해 報告하는 것이 慣例로 되어 있다. 特히 즉각적인 報告義務는 大部分 지켜

2) 法務部 資料 第98輯, 各國의 司法警察制度, p.41.

3) 法務部 資料 第98輯, 各國의 司法警察制度, p.42.

李英蘭, “搜查機關에 關한 研究”(하)

지지 않고 있는 바 이는 司法警察은 犯罪行爲가 確認되면 檢事の 指示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 警察豫備調査를 할 수 있다는 規定에 基因된 것으로 생각된다. (刑事訴訟法 第 75 條) 그리고 檢察과 法院에서 寬大한 處分이 豫想되는 輕微한 事件은 事實上 警察이 檢察의 關與없이 獨自的으로 搜查를 하고 있으며 다만 檢察은 重要한 事件에 限해 介入하는 것이 現實이며 檢察은 司法警察의 搜查 終結 以後에야 비로소 搜查記錄을 送致받아 그 토대 위에서 公訴提起 또는 不起訴 決定을 하게 된다.

따라서 獨逸·프랑스 등 國家에서는 이러한 實相 즉 法과 實際의 不一致를 根據로 司法警察은 檢察의 指揮로부터 벗어나 獨自的인 搜查權을 行使하여야 된다고 主張하고 있다.⁴⁾

④ 西 獨

西獨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檢事와 司法警察官의 關係를 上命下服 關係로 볼 수 있다.

檢事は 司法警察을 指揮하여 搜查를 하거나 直接 搜查를 할 수 있으며(刑事訴訟法 第 160 條, 第 161 條), 重要事件의 경우는 檢事が 始終 關與하고(刑事訴訟法 第 160 條, 第 161 條, 罰金節次法 第 152 條), 司法警察은 檢事를 補助하여 搜查를 하고 있으며(法院組織法 第 152 條), 送致義務를 負擔한다.(刑事訴訟法 第 163 條)

이 밖에 司法警察은 犯罪의 發生 및 證據의 蒐集에 關하여 檢事에게 報告할 義務를 진다.(刑事訴訟法 第 161 條) 그러나 重要犯罪과 高度의 法律知識이 必要한 어려운 事件은 檢事が 直接 搜查하도록 規定되어 있으나(刑事訴訟法 第 160 條, 第 161 條, 罰金節次法 第 5 條第 1 項) 르라이 브르호 地方檢察廳의 統計에 依하면 檢事が 直接 搜查한 事件은 全體 事件의 4%에 不過하며 그 나머지는 모두 司法警察이 搜查한 것으로 되어 있다.⁵⁾

⑤ 日 本

日本은 第 2 次 世界大戰 終戰 以前에는 大陸法系의 影響을 받아 우리나라와 같

4) 法務部 資料 第 98 輯, 各國의 司法警察制度, p. 39.

5) 李榮蘭, 前揭論文(하), 警察考試 第 208 號, 1982.2. p. 39 參照.

은 形態인 檢事主宰 搜查制度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終戰後에는 英美法系の 영향을 받아 警察主宰 搜查制度로 轉換하였다.

따라서 日本은 檢事와 司法警察과의 關係가 上命下服 關係가 아니라 相互協力 關係로 規定하고 있다.

日本 刑事訴訟法 第 192 條는 檢察과 都·府縣公安委員會 및 司法警察職員은 搜查에 關하여 相互協力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 結果 檢察은 搜查의 主宰者가 아닌 「第 2 次的 補充補正的 搜查機關」으로 되었다. 그리고 日本 檢察廳法 第 4 條와 第 6 條는 檢察官은 犯罪을 搜查하여 公訴를 提起하며 刑의 執行을 指揮監督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高度의 法律知識을 要하는 事件과 政治性을 띤 事件 以外는 犯罪搜查의 大部分을 警察이 行하고 있으며 檢事는 단지 公訴權을 行使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檢事와 司法警察官의 關係를 相互協力 關係로 規定하고 있기 때문에(刑訴法 第 192 條) 檢事는 司法警察職員에게 對해서 搜查에 關하여 一般的인 指示는 할 수 있으나 具體的인 事件에 對한 個別的 指揮는 스스로 搜查하는 경우에 限定된다.

다만 司法警察職員이 檢事의 犯罪搜查에 對한 指示 또는 指揮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檢察廳의 長이 公安委員會 또는 其他 監督機關에 懲戒 또는 罷免을 請求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는 것은 搜查의 適正化와 人權擁護를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權力分立과 地方分權主義에 바탕을 둔 英美法系인 英國, 美國, 日本 등 大多數 國家는 警察에게 獨自的 搜查權을 附與하여 檢察과 司法警察官이 犯罪搜查에 相互協力하도록 規定하고 있고 合理主義 思想에 바탕을 둔 大陸法系 國家인 프랑스나 獨逸 등 國家는 檢事主宰 搜查體制로 檢事が 司法警察에 對한 搜查指揮權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美·日 등 英美法系 國家에서도 重大事件에 對하여는 檢事의 搜查指揮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現實이며, 또한 프랑스, 獨逸 등 大陸法系

國家에서도 檢事가 모든 犯罪事件을 일일이 搜查指揮하도록 되어 있으나 實際運營面에 있어서는 大部分의 事件은 司法警察이 主導權을 가지고 搜查를 하고 檢事は 단지 重要事件에 對해서만 介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現實이다.

다시 말하면 英美法系나 大陸法系 共히 法과 實際가 一致하지 않음으로 因해 實際運營面에서는 많은 運營의 妙를 期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立法 趨勢는 獨·佛 등 몇몇 大陸法系 國家를 除外하고는 많은 나라들이 日本과 같이 英美法系의 影響을 받아 檢事와 司法警察官의 關係를 相互協力 關係로 規定하고 있다.⁶⁾

위와 같은 現象을 通하여 우리는 英美法系 國家에서는 警察의 自體搜查 能力의 限界性을 認定하여 檢事の 搜查權을 擴充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고 反面 大陸法系 國家에서는 檢事 主宰搜查制度의 限界性을 認識하여 警察의 獨自的 搜查權을 事實上 認定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獨逸과 프랑스 등 大陸法系 國家에서는 위와 같은 實像 즉 法과 實際의 不一致를 들어 搜查警察에게 獨自的인 搜查權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고, 日本의 경우는 大陸法系와 英美法系의 混合型을 取하여 檢事와 搜查警察이 相互協力 關係를 維持하면서 各者 獨自的인 搜查權을 保有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搜查權 問題는 大陸法系 國家이던 英美法系 國家이던 檢事에게만 全搜查權을 부여하거나 警察에게만 全搜查權을 부여한 나라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만이 日帝의 殘在를 털어 버리지 못하고 檢察과 司法警察과의 關係를 主從關係로 묶어놓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搜查制度도 世界 여러나라의 趨勢에 따라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2. 搜查專門人力의 不足

人口의 增加는 必然的으로 犯罪의 增加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아래 <表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7年末 現在 全國의 人口는 42,015,000名으로 10年前인 '78年에 比하여 5,036,000名이 增加되었다.

6) 愼鎮揆, 前揭書, p. 504, 509.

그리고 '78년부터 '87년까지 10年間 年平均 人口增加率과 犯罪增加率을 比較하면, 人口增加率은 1.4%로 犯罪增加率 6.7%에 比較 훨씬 낮다. 그리고 搜查警察의 增加率은 10年間 年平均 5.5%로 犯罪增加率 6.7%보다 1.2%가 낮다.

이와 같은 現象은 自然히 搜查警察官들에게 過重한 事件이 配當되기 때문에 激務에 事달린 優秀搜查官들이 搜查業務를 忌避하고 他部署로 자리를 옮기게 되며, 또한 他警科에 勤務하는 警察官들도 搜查部署勤務를 希望하지 않게되어 자연히 搜查警察의 質이 떨어지고 또한 搜查能率의 低下要因이 되고 있다.

<表10> 搜查人力 增加現況 ※ 單位 - 人口 : 千名

年度 區分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年平均 增加率
犯罪發生 (增減率)	509,300 (-)	563,999 (+10.7)	620,710 (+10.1)	631,950 (+1.8)	655,183 (+3.7)	786,939 (+20.1)	784,708 (-0.3)	794,777 (+1.3)	818,718 (+3.0)	902,764 (+10.3)	(6.7)
全國人口 (增減率)	36,969 (-)	37,534 (+1.5)	38,124 (+1.6)	38,312 (+0.5)	39,331 (+2.7)	39,670 (+0.9)	40,430 (+1.9)	40,467 (+0.1)	41,131 (+1.7)	42,015 (+2.1)	(1.4)
搜查警察 (增減率)	6,934 (-)	7,143 (+3.0)	7,691 (+7.7)	8,259 (+7.4)	8,713 (+5.5)	9,022 (+3.6)	8,669 (-3.9)	8,902 (+2.7)	10,975 (+23.3)	10,974 (-)	(5.5)

※ 資料 : 治安本部 統計資料에 依據 再作成

3. 搜查費의 太不足

搜查費는 自動車에 比較하면 휘발유와 같은 것이다. 휘발유가 떨어지면 自動車が 움직이지 못하듯이 搜查費가 떨어지면 搜查要員들은 搜查活動을 中止할 수 없게 된다.

1988年度 警察搜查費 現況을 보면 事件搜查費는 年間 總 891,894천원으로 이것을 總犯罪發生件數 818,718件으로 나누면 1件當 8,446원이 된다. 搜查要員들의

月間 活動費는 1人當 서울特別市の 경우는 10 萬원, 市地域 9 萬원, 其他 地域은 8 萬원으로 되어 있다.

問題는 이와 같은 事件搜查費나 搜查要員 活動費는 實際 所要額에 크게 못미친다는 點이다. 事件搜查費의 경우尹노과 殺人事件과 같은 大型事件은 1件을 解決하는데 數千萬원이 所要되는가 하면 적어도 搜查本部가 設置된 事件이라면 1件當 5百萬원 以上이 所要되며 搜查活動費도 서울의 경우 交通費, 買食費, 協助者 接待費 等を 包含하면 적어도 月 20 萬원 以上이 所要된다.

그러므로 現行 搜查費만으로는 自然히 搜查活動의 限界를 느끼게 되며 能率的인 搜查活動을 할 수 없게 된다.

4. 前近代의인 搜查裝備

科學의 發達로 因한 社會의 急激한 變遷은 犯罪의 手法과 規模 등 面에서도 過去와는 判異한 樣相을 보이고 있다. 交通手段의 發達은 아침을 서울에서 먹고 점심은 東京에 가서 먹을 수 있는 世上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犯人 또한 地域이란 限界를 벗어나 全國을 舞臺로 犯行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犯罪는 그만큼 스피드化되고, 廣域化되고, 知能化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우리 周邊에서 自動車를 利用한 大規模의 集團犯罪나 컴퓨터를 利用한 知能犯들을 흔히 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現實은 科學裝備의 不足, 搜查要員들의 新種裝備 操作能力 未熟 등으로 急變하는 現代犯罪에 效果的으로 對處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IV. 搜查能率提高을 爲해 改善되어야 할 事項

1. 警察에 獨自的 搜查權 保障

가. 獨自的 搜查의 必要性

現在 우리나라 搜查制度는 왜 改善되어야 하며 警察에 獨自的 搜查權을 부여할

月間 活動費는 1人當 서울特別市の 경우는 10 萬원, 市地域 9 萬원, 其他 地域은 8 萬원으로 되어 있다.

問題는 이와 같은 事件搜查費나 搜查要員 活動費는 實際 所要額에 크게 못미친다는 點이다. 事件搜查費의 경우尹노과 殺人事件과 같은 大型事件은 1件을 解決하는데 數千萬원이 所要되는가 하면 적어도 搜查本部가 設置된 事件이라면 1件當 5百萬원 以上이 所要되며 搜查活動費도 서울의 경우 交通費, 買食費, 協助者 接待費 等を 包含하면 적어도 月 20 萬원 以上이 所要된다.

그러므로 現行 搜查費만으로는 自然히 搜查活動의 限界를 느끼게 되며 能率的인 搜查活動을 할 수 없게 된다.

4. 前近代의인 搜查裝備

科學의 發達로 因한 社會의 急激한 變遷은 犯罪의 手法과 規模 등 面에서도 過去와는 判異한 樣相을 보이고 있다. 交通手段의 發達은 아침을 서울에서 먹고 점심은 東京에 가서 먹을 수 있는 世上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犯人 또한 地域이란 限界를 벗어나 全國을 舞臺로 犯行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犯罪는 그만큼 스피드化되고, 廣域化되고, 知能化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우리 周邊에서 自動車를 利用한 大規模의 集團犯罪나 컴퓨터를 利用한 知能犯들을 흔히 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現實은 科學裝備의 不足, 搜查要員들의 新種裝備 操作能力 未熟 등으로 急變하는 現代犯罪에 效果的으로 對處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IV. 搜查能率提高을 爲해 改善되어야 할 事項

1. 警察에 獨自的 搜查權 保障

가. 獨自的 搜查의 必要性

現在 우리나라 搜查制度는 왜 改善되어야 하며 警察에 獨自的 搜查權을 부여할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前述한 바와 같이 搜查事件의 98%가 警察에 의해 搜查가 이루어지고 있을뿐 아니라 少數의 檢事로는 年間 90萬件 以上 發生되는 事件을 일일이 指揮監督할 수 없기 때문에 檢事の 指揮監督이 形式에 그칠 수 밖에 없고 오히려 檢事の 不必要한 간섭이나 搜查指揮의 지연 등으로 搜查의 能率을 阻害하기 때문이다.

둘째, 公訴業務의 純粹性 確保를 爲해서는 搜查機關과 公訴機關을 分離시켜야 된다는 點이다.

이는 權力分立原則에도 合當하다.

公訴와 搜查와의 關係를 볼 때 搜查가 公訴와 無關한 것은 아니지만 公訴의 提起와 遂行은 當該事件의 搜查를 擔當했던 者가 遂行하는 것 보다는 搜查와 無關한 者가 搜查의 結果만을 가지고 判斷處理하는 것이 先入見을 排除하고 客觀性을 가지고 裁判에 臨할 수 있을뿐 아니라 搜查와 公訴過程에서의 檢事の 專權的 權力行使을 牽制하여 個人의 人權侵害를 防止할 수 있고 이는 곧 國家權力이 分散되어 가고 있는 歷史的 必然性에도 부합된다고 하겠다.

셋째, 搜查能率 提高를 위해서는 搜查指揮의 一元化가 必要하다는 點이다.

한 組織이 힘을 發揮하려면 一絲不亂한 指揮命令系統이 確立되어야 한다. 이것은 行政學에서 말하는 組織의 基本原理인 命令統一의 原理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法上 司法警察官이 檢事の 指揮를 받아 搜查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搜查를 擔當한 司法警察官吏들은 管轄擔當檢事の 指揮와 所屬上司의 指揮를 二元的으로 받을 수 밖에 없다. 勿論 理論上으로는 相互 다른 業務命令이 있을 때는 所屬 直屬上司의 命令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犯罪搜查만은 法の 規定에 따라 檢事の 命令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現象은 警察內部 上下間의 갈등과 不和를 造成하게 되어 搜查能率을 阻害하는 重要한 要因이 되고 있을뿐 아니라 警察士氣에도 크게 影響을 주어 優秀 搜查人力의 誘致에도 많은 支障을 주고 있다.

네째, 現行法에 依하면 犯罪搜查에 關한 權限과 責任을 檢事が 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檢事は 搜查에 對한 指揮權만 行使하지 그 結果에 對한 責任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例를 든다면 管內에서 殺人, 強盜, 強姦 등 強力 犯罪가 發生하여 檢舉하지 못한다면 國民들은 의례히 警察이 無能하여 犯人을 檢舉하지 못한다고 詰責하지 결코 檢察을 指彈하는 例는 없다. 이와 같은 現象은 分明히 모순이 아닐 수 없다.

法上 搜查權이 檢事에게 있다면 當然히 搜查結果에 對한 責任 또한 檢事が 지는 것이 論理上 合當하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 全體 搜查事件의 1~2% 밖에 處理하지 않고 있는 檢事에게 責任을 돌리는 것 또한 不合理하다. 그러므로 搜查權은 實際로 全體 搜查事件의 98%를 擔當 處理하는 警察에게 넘겨주고 搜查結果에 對한 責任 또한 警察이 지는 것이 權限과 責任의 一致라는 原則에도 合當한 것이다.

다섯째, 檢事の 再搜查로 因한 國民의 二重被害를 防止하기 위해서도 警察에게 獨自的 搜查權을 부여하여야 한다.

現行 刑事訴訟法은 警察에서 作成한 調書에 對해 證據能力을 認定하지 않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搜查節次인 令狀申請을 檢事만이 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와 같은 規定을 둔 根據는 人權擁護에 있다고하나 結果의으로는 人權을 유린하는 結果를 招來하고 있다.

즉, 警察이 令狀을 申請함에 있어 반드시 檢察을 經由할 必要가 없음에도 檢察을 통해 令狀을 申請하도록 規定함으로써 被疑者들이 不必要하게 長時間 警察에서 待機하게 되며 또한 警察에서 作成한 調書에 對해 證據能力을 認定하지 않도록 規定함으로써 警察에서 이미 搜查가 끝난 事件을 다시 檢事の 調書作成을 위해 被疑者는 勿論 參考人까지 再次 檢察에 出頭시킴으로서 二重의 不便을 國民들에게 주고 있다.

이섯째, 現行法上 搜查는 檢事が 主宰하고 司法警察官은 檢事の 指揮를 받아 搜查를 하도록 規定하고 있기 때문에 警察은 犯人을 逮捕함에 있어 現行犯이나 緊急拘束要件에 該當되는 者 以外는 容疑者를 發見하고도 任意同行의 方法 以外는 搜查를 할 수 있는 法的 根據가 없어 現行 搜查制度下에서는 合法搜查가 事實上 어렵다.

나. 獨自의 搜查權 附與를 反對하는 見解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世界的인 추세로 보나 理論的 根據를 볼 때 警察에 獨自의 搜查權을 附與하는 것은 至極히 當然하다.

그러나 一部에서는 警察의 資質未洽, 人權擁護 등의 理由를 들어 反對하는 立場을 取하고 있는 바, 그 理由를 살펴보면 첫째, 人權保障을 위해서는 檢事가 搜查의 主宰者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法律的 知識이 얇고 人權意識이 稀薄한 警察이 犯罪搜查를 專擔하게 되면 適正 搜查節次를 度外視하게 되어 結局 被疑者의 人權을 侵害하게 되므로 法律知識이 높고 人權擁護를 담당하는 機關인 檢事에게 搜查의 主導權을 附與하는 것이 妥當하다는 것이다.

둘째, 搜查는 訴追를 爲한 準備行爲로서 搜查段階부터 檢事가 關與하여 證據를 把握하고 資料를 整理補充하여 公訴段階로 넘어가는 것이 能率的이고 眞實發見과 人權保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搜查權과 公訴權 모두를 檢事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刑事司法 業務에 對한 國民의 信賴를 받으려며는 檢察이 搜查權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理由는 法律知識이 낮고 資質이 不足한 下級 搜查要員들이 搜查를 하고 있기 때문에 事件處理에 對한 公正을 期할 수 없고 搜查權을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搜查는 檢事의 指揮아래 이루어져야 公正하다고 國民으로부터 信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尠大한 人力과 組織을 가진 警察, 特히 中央集權的 組織形態를 갖추고 있는 警察에게 搜查權까지 附與한다면 警察國家의 길을 걷을 念慮가져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警察에 搜查權을 附與하면 警察의 政治權力과의 妥協性 때문에 權力型 犯罪에 對하여 搜查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섯째, 警察은 檢事에 比하여 專門的인 法律知識이 낮기 때문에 租稅犯, 經濟 事犯 등 知能犯에 對한 搜查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 兩見解에 對한 檢討

警察에 獨自的 搜查權을 附與하여야 하는 主張과 附與해서는 안된다는 主張中 重要部分을 比較 檢討해 보면 다음과 같은 批判이 나올 수 있다.

첫째, 搜查는 警察이 遂行하고 檢事は 公訴官으로서 業務에 專念하여야 한다는 主張과 搜查와 訴追의 一體指向性を 考慮할 때 檢事が 搜查의 主導的 權限을 가져야 한다는 主張의 對立이다.

筆者는 이 問題에 對하여 兩側 共히 相當한 理由가 있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先進諸國이 實體的 眞實 發見과 人權保障을 위해서는 公判庭에서의 直接 審理가 有效하다고 判斷되어 公判中心主義로 移行되고 있음을 考慮할 때 檢事が 搜查段階부터 關與하는 것 보다 오히려 搜查는 警察에 넘기고 公判에만 專念하는 것이 檢事側에서 볼 때는 過重한 業務에서 벗어나게 될뿐 아니라 實體的 眞實發見에도 도움이 되고 警察側으로 볼 때는 그만큼 搜查에 對한 責任을 느끼게 되며 一般國民의 立場에서 볼 때도 檢事の 二重召換으로 因한 被害를 防止하여 人權擁護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理由만으로 모든 事件에 對하여 檢事에게 搜查權을 認定하지 않을 境遇 各種 重要事件을 搜查함에 있어 檢事나 警察側 共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檢事側에서 보던 複雜하고 重大한 事件에 對한 公訴維持를 위해서는 搜查段階서부터 關與하는 것이 效果的일 것이며 警察側 立場에서도 重要 經濟事犯이나 政治事犯 등 高度의 專問知識이 必要한 事件에 對한 搜查는 오히려 檢事와 協調하여 搜查를 하는 것이 能率的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政治犯 등 特定犯罪에 對하여는 檢事が 直接 管掌搜查를 하거나 警察과 相互 協調搜查를 하는 方案이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搜查權의 所在에 관련된 意見對立으로서 警察에 搜查權을 주면 政治에 利用되기 쉽고 權力型 犯罪에 對한 搜查를 할 수 없으며 人權侵害의 危險성이 높다는 主張이다.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警察의 眞正한 政治的 中立은 오히려 搜查權 獨立이 이루어져야 實現된다고 생각한다. 그 까닭은 警察機構가 獨立이 되어 政治的으로

이들의 中立的인 位置에 依하고 해도 政治性을 띤 檢察의 事件指揮가 있다면 警察은 오히려 政治的 中立을 堅持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警察이 資質이 不足하여 人權侵害의 危險性이 있다는 問題는 只今 當장은 警察의 資質이 搜查權을 獨自的으로 行使할 程度의 水準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搜查權 獨立이 되어 警察이 社會的으로 認定을 받는 位置에 오르면 自然히 優秀한 人材가 警察에 많이 모이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警察大學에서도 많은 人材가 輩出되고 高試出身者들도 해마다 警察에 迎入되고 있음으로 警察의 資質問題는 甚지않아 解決되리라 생각된다.

세째, 警察에게 搜查權을 附與하면 警察國家를 招來하고 現行대로 檢사가 搜查를 主掌하면 檢察 과소國家를 招來한다는 兩論의 對立이다.

著者の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것은 問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外國의 例를 보더라도 日本이나 美國의 경우 搜查權이 警察에 있지만 日本이나 美國을 가르켜 警察國家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또 檢察에 搜查權이 있다 하여 이를 곧 檢察 과소國家라고 부르는 경우도 없다.

搜查權을 어느 機關에 歸屬시킬 것이 妥當하느냐 하는 問題는 搜查의 目的達成과 人權保障이라는 側面에서 考慮되어야 할 것이기 故로 權力の 集中과 肥大化의 防止를 위하여 搜查權을 警察에 附與할 수 없다든가 檢察에 附與할 수 없다는 것은 論理上 妥當性이 없다고 思料된다.

2. 搜查專門人力の 確保

가. 人力的 量的 確保

前述한 바와 같이 搜查 人력은 지난 '78 ~ '87年間 年平均 5.5%의 增加率을 보여 왔으며 이에 比해 犯罪增加率은 같은 時間에 6.7%의 增加率을 가져왔다.

'88年度 7月 31日 基準 全國 搜查要員數는 總 10,974名으로 이 중 調查要員이 2,213名, 刑事要員이 6,179名, 鑑識要員이 328名, 內勤要員이 1,009名, 간수要員이 531名 등으로 되어 있다.

이들의 中立的인 位置에 依하고 해도 政治性을 띤 檢察의 事件指揮가 있다면 警察은 오히려 政治的 中立을 堅持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警察이 資質이 不足하여 人權侵害의 危險性이 있다는 問題는 只今 當장은 警察의 資質이 搜查權을 獨自的으로 行使할 程度의 水準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搜查權 獨立이 되어 警察이 社會的으로 認定을 받는 位置에 오르면 自然히 優秀한 人材가 警察에 많이 모이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警察大學에서도 많은 人材가 輩出되고 高試出身 者들도 해마다 警察에 迎入되고 있음으로 警察의 資質問題는 甚지않아 解決되리라 생각된다.

세째, 警察에게 搜查權을 附與하면 警察國家를 招來하고 現行대로 檢사가 搜查를 主宰하면 檢察 과소國家를 招來한다는 兩論의 對立이다.

著者の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것은 問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外國의 例를 보더라도 日本이나 美國의 경우 搜查權이 警察에 있지만 日本이나 美國을 가르켜 警察國家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또 檢察에 搜查權이 있다 하여 이를 곧 檢察 과소國家라고 부르는 경우도 없다.

搜查權을 어느 機關에 歸屬시킬 것이 妥當하느냐 하는 問題는 搜查의 目的達成과 人權保障이라는 側面에서 考慮되어야 할 것이기 故로 權力の 集中과 肥大化의 防止를 위하여 搜查權을 警察에 附與할 수 없다든가 檢察에 附與할 수 없다는 것은 論理上 妥當性이 없다고 思料된다.

2. 搜查專門人力の 確保

가. 人力的 量的 確保

前述한 바와 같이 搜查 人력은 지난 '78~'87年間 年平均 5.5%의 增加率을 보여 왔으며 이에 비해 犯罪增加率은 같은 時間에 6.7%의 增加率을 가져왔다.

'88年度 7月 31日 基準 全國 搜查要員數는 總 10,974名으로 이 중 調查要員이 2,213名, 刑事要員이 6,179名, 鑑識要員이 328名, 內勤要員이 1,009名, 간수要員이 531名 등으로 되어 있다.

二、(1) 捜査要員(1) 調査要員時 刑事委員에 對한 治安本部의 所要人力 判斷 內容
 (2) 以內 調査要員은 辦案人員의 2,833名이며 比의 職員은 2,213名으로 620名이
 不足하다, 刑事委員은 辦案人員의 7,909名이다 比의 職員은 6,179名으로 1,730
 名이 不足한 것으로 되어 있다.

以下 調査要員과 刑事委員에 對한 所要 判斷根據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調査要員 所要 判斷

<表11>

1988.7.31 基準

現 員	1人當業務量 (月間)	適正業務量	所要人力	不足人力	備 考
2,213名	16件	12.5件	2,833名	620名	刑事民願 年間 426,070件

※ 資料：治安本部 '88統計

<算出根據>

○ 刑事民願事件의 件當 平均 處理所要 時間：15時間

補充 調書作成：3時間	搜查 報告書作成：1時間
參 考 人 調 書：2 //	原票, 資料票作成：1 //
證 據 物 確 認：4 //	送 致 書 類 作 成：1 //
被 疑 者 訊 問：4 //	※ 合 計：16時間

○ 適正業務量：月 1人當 12.5件

• 365日 - 65日(公休日) = 300日 × 8時間 = 2,400時間

• 2,400時間 ÷ 16時間(1件當 處理所要時間) = 150件(1人當 年間 處理

可能件數)

150件 ÷ 12月 = 12.5(1人當 月 處理可能 件數)

- 所要人員：2,833名
 - 2,213名(現員) × 16件(1人當月間業務量) = 35,408件(全調查要員月間業務量)

- $35,408 \text{ 件} \div 12.5 \text{ 件} = 2,833 \text{ 名(所要人員)}$

- 不足人員：620名

- $2,833 \text{ 名} - 2,213 \text{ 名} = 620 \text{ 名}$

② 刑事要員 所要 判斷

<表12>

1988.10.31 基準

現 員	業 務 量 (月間)	適正業務量	所要人力	不足人員	備 考
6,179名	6.4件	5件	7,909名	1,730名	認 知 事 件 476,336件

※ 資料：治安本部 '88統計

<根 據>

- 犯罪檢舉 所要 期間

- 事件發生 20日 以內 70%

- 3個月~1年 以內 30%

- 年間 刑事 1人當 適正業務量：60件(月5件)

- 所要人力：7,909名

- $6,179 \text{ 名(現員)} \times 6.4 \text{ 件(1人當月間業務量)} = 39,546 \text{ 件(全刑事要員月間業務量)}$

- $39,546 \text{ 件} \div 5 \text{ 件} = 7,909 \text{ 名(所要人員)}$

- 不足人員：1,730名

- $7,909 \text{ 名} - 6,179 \text{ 名} = 1,730 \text{ 名}$

※ 日本の 境遇 捜査人力 判斷 基準은 1人當年52件임(月43件)

위의 統計表 11, 12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搜查要員은 우선 人員數 面에서 크게 不足한 實情으로 이와 같이 不足한 搜查警察로서는 業務를 迅速히 그리고 完璧하게 遂行할 수 없음은 너무나도 自明하다.

調査要員 1人當 年間 適正處理件數는 150件에 不過한데 實際 配當되는 件數는 192件이다.(서울 江南 警察署의 境遇) 따라서 期間內 處理못하는 事件이 39.8%나 되고 있다.

그리고 刑事要員의 境遇 1人當 年間 適正處理件數는 60件인데 比해 實際 配當되는 件數는 77件으로 刑事들은 하루 平均 16時間 以上을 勤務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므로 搜查의 能率化를 爲해 가장 時急히 解決되어야 할 것이 搜查人力의 確保라 하겠다.

나. 人力의 質的 向上

搜查人力의 量的 確保도 重要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것이 搜查要員의 質的 向上이라 하겠다. 그 까닭은 犯罪搜查의 98%가 司法警察의 손에 依해 解決되고 있고 國家 刑罰權의 適正遂行 與否가 바로 司法警察의 資質과 直結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最近 各界에서 論議되고 있는 警察의 搜查權 獨立問題도 바로 搜查要員들의 資質과 關聯이 깊기 때문이다. 優秀 搜查要員의 確保方案은 세가지 側面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첫째가 募集過程에서 어떻게 하던 優秀한 人材를 搜查要員으로 誘致하느냐의 問題이고, 둘째는, 募集된 資源을 어떻게 教育을 시켜 專門人力으로 育成하느냐의 問題이며, 셋째는 教育 받은 專門人力을 어떻게 事後 管理하느냐의 問題이다.

以下 筆者의 所見을 辟해 보고자 한다.

① 募 集

人力의 質的 向上을 爲해서는 가장 重要한 것이 募集段階서부터 優秀한 人材를 警察로 誘致하는 作業이다. 그런데 問題가 되는 것은 요즘과 같이 警察官에 對한

待遇가 未洽한 與件下에서 突然 優秀한 人材들이 警察에 志望할 것이나의 問題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與件은 앞으로 漸進的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고 다만 本節에서는 募集對象에 對한 資格要件과 募集方法에 對하여 言及코자 한다.

첫째, 新規採用의 境遇 搜查警察은 業務의 專門性과 技術性을 考慮할 때 巡警被은 最小限 專門大 以上の 學歷을 所持하여야 하고 幹部의 境遇는 正規 四年制 大學을 卒業한 者 中에서 公開競爭試驗에 依據 嚴格히 選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在職警察官 中에서 搜查要員을 選拔할 때는 非幹部의 境遇는 高卒以上 者로서 最小限 警察經驗이 3年 以上 된 者 中에서 勤務成績이 優秀하고 搜查要員으로서의 適性이 맞는 者를 選拔하여야 하며 幹部의 境遇는 法大 卒業者 또는 幹部候補生 및 警察大學 出身者 中에서 適性이 맞다고 認定되는 者를 選拔하여야 한다.

參考로 美國 FBI의 境遇와 英國 警察廳 그리고 우리나라의 搜查要員에 對한 任用過程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美國 FBI>

美FBI 要員의 資格基準과 任用節次를 보면 特別搜查官은 聯邦人事委員會가 施行하는 採用試驗을 거쳐 任用되는데 應試資格은

- 美國 市民權을 가지고 있을 것.
- 어떤 地域에서 勤務하여도 支障이 없을 것.
- 23歲 ~ 35歲 未滿일 것.
- 視力 聽力이 正常일 것.
- 運轉免許證을 가지고 있을 것.
- 身體 健康하며 武器使用 技術과 自己 방어에 問題가 없을 것.

等으로 되어 있고, 學歷은

- 法學部 大學院을 卒業하여 碩士學位를 소지할 것.
- 大學에서 會計學을 專攻했을 것.
- 大學에서 外國語를 專攻하여 會話에 능숙할 것.
- 大學에서 化學, 物理學, 生化學, 藥學, 電子學 등을 專攻하여 碩士學位

以上을 取得했을 것.
 等으로 嚴格히 規定하고 있다.

〈英 國〉

英國 런던 警視廳의 警察官 및 刑事任用 過程을 보면 制服警察官의 境遇는 警察學校에 入校하여 13 週間の 教育을 履修한 後 見習巡警으로 2 年間 勤務한 다음 巡警으로 任用되며 刑事要員은 2年 以上の 巡警經驗을 가진 者 中에서 必要한 教育을 履修로 시킨 다음 任命한다.

刑事로 志願 하는 者는 먼저 所屬上級の 面接試驗을 거쳐 適格判定을 받아야 하며 適格者로 認定을 받았을 때는 補助刑事로 任命되어 12 個月 동안 先輩刑事와 같이 勤務하면서 實務를 習得하게 된다. 이 기간중 上司로부터 다시 適格判定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시 警察學校에 入校하여 專門教育을 받고 警察學校에서 實施하는 試驗을 거쳐 警視廳 本部에서 實施하는 適格性 有無를 判定하는 面接試驗에 合格하여야 비로소 見習刑事가 되고 正式刑事는 또 다시 12 個月의 見習期間을 부사히 마쳐야 비로소 任命된다.⁷⁾

〈韓 國〉

우리나라는 1982 年度에 內務部 規則 第 547 號로 搜查要員 任用規程을 制定하여 本 規定에 依히 搜查要員을 任用하고 있다. 그러나 一部 人事權者의 沒理解와 規定과 現實의 不一致 等으로 잘 履行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現實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漸次 定着될 것으로 생각된다.

參考로 本 規程 內容을 살펴보면 이 規程은 市道 警察局 및 一線 警察署에 勤務하는 警衛 以下の 搜查要員을 任用하는데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고 있는데 內容은 아래 表와 같다.

7) “英國의 警察制度” 警察考試, 1982.6. p.101.

○ 資格要件

階級別	資 格 要 件	備 考
警 衛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警察經歷 3年 以上 ○ 搜查經歷 6月 " ○ 武道 3級 以上 ○ 正義感이 強하고 淸렴한 者 ○ 排除條件에 該當되지 않는 者 	第 4 條
刑 事 要 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警察經歷 3年 以上 ○ 武道 2級 以上 ○ 性格이 強直하고 活動的이며 誠實한 者 ○ 排除事由에 該當되지 않는 者 	"
調 查 要 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警察經歷 3年 以上 者 ○ 한글打字 3級 以上 者 ○ 性格이 치밀하고 誠實한 者 ○ 排除事由에 該當되지 않는 者 	"
鑑 識 要 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警察經歷 3年 以上 ○ 理工系 出身者 또는 鑑識分野에 소질이 있는 者 ○ 性格이 穩當하고 忍耐力이 있는 者 ○ 排除事由에 該當되지 않는 者 	"

○ 選拔方法

搜查要員 任用規程에 依하면 搜查要員의 選拔은 試驗에 依하도록 되어 있는데 評價科目은 刑法, 刑事訴訟法, 搜查實務 等이며 平均 60點 未滿이거나 40點 未滿의 科目이 있을 때에는 任用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試驗에 合格된 者는 다시 警察局 또는 警察署에 있는 搜查要員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搜查職務教育을 받은 後 任用候補者 順位에 따라 缺員이 생기면 任用하도록 되어 있다.⁸⁾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搜查要員 任用制度는 거의 大部分의 搜查要員을 內部에서 選拔 充員하도록 되어 있으며 一般을 對象으로 募集하는 開放制 採

8) 搜查要員 任用規程(82.2.25 內務部 例規 第 549 號 參照)

用方法是 採擇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獨自的 搜查權 保障을 試圖함에 있어 가장 先行되어야 할 點이 바로 搜查警察의 資質向上이라는 點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果敢히 門戶를 開放하여 外部로부터 優秀한 人材를 迎入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一線 搜查課長은 적어도 司法考試 出身者나 警察大學 卒業者로 補하고 非幹部 搜查要員의 境遇도 해마다 一定 人員(50名~100名)을 法學, 會計學, 化學, 物理學 等 警察과 關聯있는 學問을 專攻한 專門大 出身 以上 者 中에서 選拔하여 充員해 나가는 것이 搜查警察의 資質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② 教 育

搜查要員의 資質向上을 爲해서는 搜查要員에 對한 專門教育을 強化하여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必要가 없다. 그러면 本 項에서는 外國의 搜查警察 教育制度和 우리나라 制度를 比較해 본 後 앞으로의 教育方向을 提示해 보고자 한다.

<美 國>

美FBI 아카데미는 FBI 職員의 初任者 및 現職者에 對한 再教育을 實施하고 있는데 初任教育은 16週, 現職者 再教育은 1~4週이다. 그리고 FBI 내셔널 아카데미는 地方警察의 中堅幹部 教育을 實施하고 있는데 教育期間은 11週로서 外國 警察官의 入校도 許容된다.

<日 本>

日本 警察의 搜查教育機關으로는 警察大學을 爲始하여 特別搜查幹部研修所 縣警察學校 등이 있는데 代表的인 專門教育機關은 特別搜查幹部研修所로서 研修期間은 6個月이며 教育對象은 警察大學 本科 또는 專攻科를 修了하고 경부로서 5年 以上의 犯罪搜查經歷을 가진 者 中에서 45歲 未滿 者로 장차 搜查幹部로서 寄與할 수 있다고 認定되는 適格者를 選拔 教育한다.

<프 랑 스>

프랑스의 搜查教育 代表機關은 國立搜查幹部學校로서 이 學校에서는 外部에서 19歲 以上 30歲 未滿의 高卒者를 50%, 現職에서 35歲 未滿者를 50% 選拔하

여 11個月間의 教育을 시킨 後 警衛로 任官시킨다.

〈韓 國〉

韓國의 搜查專門 教育機關으로서는 警察綜合學校에 設置된 專門化 課程과 警察大學 附設 教育機關인 搜查幹部研修所가 있다. 警察綜合學校에 設置된 專門化 課程은 警衛級을 對象으로 8週間의 教育을 實施하고 있으며 이 課程에서는 刑事演習, 刑事政策, 犯罪心理學, 法醫學 等 主로 搜查에 必要한 科目을 履修하고 있다.

그리고 搜查幹部研修所에서는 警正, 警監 中에서 搜查分野에 適性이 있고 優秀하다고 생각되는 職員을 1회에 30名~50名씩 選拔하여 6個月間 高度의 專門化 教育을 實施하고 있다.

이 밖에 機關單位로 職場訓練을 實施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나 業務의 폭주 等으로 形式化되고 있는 實情이며 特히 非幹部의 경우는 新任教育課程에서 10時間 內외의 搜查教育을 받고 一線에 配置되어 搜查業務를 擔當하고 있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搜查教育은 幹部教育에 比해 非幹部에 對한 搜查教育이 너무나도 未洽하고 放置된 狀態가 아닌가 생각되며 이 點이 바로 搜查教育의 問題點이라고 지적된다. 搜查教育은 幹部에 對한 教育도 重要하지만 그보다도 非幹部에 對한 教育이 더욱 重要하다.

그 까닭은 搜查를 實際 擔當하는 職員은 幹部가 아니고 非幹部들이며 이들이 最一線에서 犯人을 檢舉하고 被疑者를 訊問하는 等 搜查業務의 大部分을 處理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搜查教育은 非幹部에 對한 教育이 強化되는 方向으로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筆者의 생각으로는 搜查教育만을 專擔하는 刑事學校를 別途로 設立하여 新任課程과 補修課程을 두어 新任課程에서는 外部에서 專門大出身 以上者를 選拔 1年間의 教育을 시킨 후 搜查要員(巡警級)으로 任用하고 補修課程에서는 非幹部課程과 幹部課程으로 區分 非幹部課程에서는 警査級 以下에 對한 補修教育을 擔當하게 하고 幹部課程은 現 警察綜合學校에서 實施하고 있는 專門化 課程을 흡수 警衛, 警監級에 對한 教育을 擔當하게 하고 警大에 附設된 搜查幹

2.1

部研修所는 現行대로 存置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 밖에 非幹部에 對한 教育을 強化하기 爲하여 各級 幹部들이 形式化되어가고 있는 職場訓練을 實質적으로 強化하여 內實있는 教育이 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原來 搜查라고 하는 것은 理論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많은 經驗이 必要하며 이와 같은 經驗은 職場訓練을 통해 補完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3) 事後管理

빈번한 補職移動이 專門化를 阻害함은 너무나도 當然한 일이다. 그리고 搜查의 能率化를 期하기 위해서는 專門化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常識에 屬한다. 그런데 實際 人事運營에 있어서는 民願部署 長期勤務로 因한 不條理 發生, 警備部署 勤務, 補職 循環 等の 理由로 搜查要員들이 搜查部署가 아닌 他機能으로 轉補되는 事例가 許多하다.

심지어는 6個月 동안 專門教育을 履修한 搜查幹部研修所 出身 搜查幹部에 對하여도 他部署로 쉽게 轉補가 可能하다. 이와 같은 基擘없는 人事運營은 아무리 優秀한 人材를 選拔하여 優秀한 教育을 시켜 놓아도 搜查業務에는 별다른 寄與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搜查의 專門化를 期하고 搜查要員의 資質을 높이기 위해서는 別途의 搜查要員 人事規定을 制定하여 搜查要員에 對한 獨立的 人事運營을 實施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昇進과 補職이 搜查機能 內部에서 別途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3. 搜查費의 現實化

前述한 바와 같이 搜查費는 自動車에 比喩하면 휘발유와 같은 것이므로 搜查費가 없으면 搜查活動을 할 수 없게 되며 搜查費가 不足하면 그만큼 搜查活動에 制約을 받게 된다.

參考로 우리나라 搜查警察에 對한 搜查費 策定 現況을 보면 '87年度의 境遇 刑事活動費를 包含하여 總 1,446,888,000 원이다. 이와 같은 金額을 事件發生 件數와 刑事數로 나누어 보면 事件搜查費는 件當 8,042 원 刑事活動費는 地域에 따라 多

2.1

部研修所는 現行대로 存置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 밖에 非幹部에 對한 教育을 強化하기 爲하여 各級 幹部들이 形式化되어가고 있는 職場訓練을 實質적으로 強化하여 內實있는 教育이 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原來 搜查라고 하는 것은 理論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많은 經驗이 必要하며 이와 같은 經驗은 職場訓練을 통해 補完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3) 事後管理

빈번한 補職移動이 專門化를 阻害함은 너무나도 當然한 일이다. 그리고 搜查의 能率化를 期하기 위해서는 專門化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常識에 屬한다. 그런데 實際 人事運營에 있어서는 民願部署 長期勤務로 因한 不條理 發生, 警備部署 勤務, 補職 循環 等の 理由로 搜查要員들이 搜查部署가 아닌 他機能으로 轉補되는 事例가 許多하다.

심지어는 6個月 동안 專門教育을 履修한 搜查幹部研修所 出身 搜查幹部에 對하여도 他部署로 쉽게 轉補가 可能하다. 이와 같은 基擘없는 人事運營은 아무리 優秀한 人材를 選拔하여 優秀한 教育을 시켜 놓아도 搜查業務에는 별다른 寄與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搜查의 專門化를 期하고 搜查要員의 資質을 높이기 위해서는 別途의 搜查要員 人事規定을 制定하여 搜查要員에 對한 獨立的 人事運營을 實施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昇進과 補職이 搜查機能 內部에서 別途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3. 搜查費의 現實化

前述한 바와 같이 搜查費는 自動車에 比喩하면 휘발유와 같은 것이므로 搜查費가 없으면 搜查活動을 할 수 없게 되며 搜查費가 不足하면 그만큼 搜查活動에 制約을 받게 된다.

參考로 우리나라 搜查警察에 對한 搜查費 策定 現況을 보면 '87年度의 境遇 刑事活動費를 包含하여 總 1,446,888,000 원이다. 이와 같은 金額을 事件發生 件數와 刑事數로 나누어 보면 事件搜查費는 件當 8,042 원 刑事活動費는 地域에 따라 多

少 差巽는 있으나 月 9 萬원 程度에 不過하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事件搜查費의 경우 搜查本部가 設置된 事件은 但 1 件을 解決하는데도 數百萬원 또는 數千萬원이 所要되는 境遇가 許多하며 刑事活動費의 境遇도 交通費, 買食費, 協助者 接待費 등을 計算하면 서울의 境遇 最小限 하루에 7,750 원이 所要된다.(表 13 參照)

그러나 既述한 바와 같이 刑事들의 하루 活動費는 1 日 3,000 원 程度에 不過하다. 그러므로 搜查費는 實際에 있어 크게 不足한 實情이며 하루속히 現實化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表13〉 捜査要員 活動費 所要内譯(1人當 月額)

内譯	區分	道 廳 所 在 地 以 上	市 所 在 地	郡 所 在 地
月 所 要 額		232,500 圓	206,700 圓	165,300 圓
1 日 所 要 額		7,750 圓	6,890 圓	5,510 圓
交 通 費		2,100 圓 (緊急出動, 容疑者 檢摩 等)	2,070 圓 (左 同)	1,730 圓 (左 同)
買 食 費		2,000 圓 (一齊團東 處犯地域潛伏, 야생극우 등)	1,700 圓 (左 同)	1,400 圓 (左 同)
課 報 提 供		3,150 圓	2,820 圓	2,180 圓
異 日 擊 者		食 代 900 圓(1,800 圓 × $\frac{1}{2}$ 日) 茶 代 1,000 圓(500 圓 × 2 人)	食 代 900 圓(左 同) 茶 代 1,000 圓(左 同)	食 代 600 圓(1,800 圓 × $\frac{1}{3}$ 日) 茶 代 1,000 圓(左 同)
出 接 待 費		交 通 費 1,000 圓(2,000 圓 × $\frac{1}{2}$ 日) 담 배 250 圓(500 圓 × $\frac{1}{2}$ 日)	交 通 費 670 圓(2,000 圓 × $\frac{1}{3}$ 日) 담 배 250 圓(左 同)	交 通 費 330 圓(2,000 圓 × $\frac{1}{6}$ 日) 담 배 250 圓(左 同)
其 他 雜 費		500 圓 (電話料金, 資料 복사비 등)	300 圓	200 圓

※ 資料 : 治安本部 捜査部 作成(88.7.31)

4. 搜查裝備의 現代化

現代社會는 高度의 産業化 社會로 社會構造가 複雜하고 犯罪環境 또한 날로 急變하여 各種 犯罪가 知能化, 機動化, 廣域化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犯罪는 過去와 같이 單純한 檢問檢索이나 探問搜查 等 原始的인 搜查方法 만으로는 犯人의 索出檢擧가 어렵고 실사 犯人을 檢擧하였다 하더라도 物的 證據를 確保하지 못하여 有罪判決을 받지 못하는 境遇가 많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搜查는 더욱 科學化되어야 하며 搜查裝備 또한 最新化되어야 한다.

科學搜查裝備란 搜查를 合理的이고 能率의으로 遂行하기 爲해 製作된 機器 裝具 施設 等으로 種類가 多樣하다.

參考로 最近 國內外에서 搜查에 活用되고 있는 科學搜查裝備를 紹介하면 機動裝備(搜查用 車輛 等) 通信裝備(無電機 휴대용 페이징 등) 監視裝備(赤外線 望遠鏡) 探知探索裝備(金屬探知器, 거짓말 探知器, 音聲分析器 等) 採證裝備(指紋採取器) 鑑識機資材(指紋擴大攝影器, 레이저指紋檢出機, 指紋自動 分類機) 등이 있다.

現在 우리 警察에서 使用하고 있는 裝備를 살펴보면 指紋採取器, 金屬探知器, 거짓말 探知器, 赤外線望遠鏡, 페이징 等 主로 基礎裝備로서 아직 先進國에 비해 不足함이 많다.

특히 科學搜查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指紋 自動 分類器, 휴대용 레이저指紋檢出機, 證據物錄畫送受信機, 夜間攝影望遠鏡 等 最新裝備를 우리 警察은 갖추지 못하고 있는 實情으로 하루 속히 確保되어야 할 것이다.

5. 搜查의 科學化

科學搜查란 犯人의 索出과 檢擧 또는 犯罪證據의 蒐集 分析 評價를 科學的 方法에 依據 遂行하는 搜查方法을 科學搜查라 하며 이에 反해 六感搜查란 客觀的 資料에 依한 判斷 以前에 搜查官 個人의 經驗的, 直觀的 判斷을 基礎로 搜查를 實施하는 方法을 말한다.

그러므로 六感搜查가 經驗과 感性에 바탕을 두는 것이라면 科學搜查는 合理性和

4. 搜查裝備의 現代化

現代社會는 高度의 産業化 社會로 社會構造가 複雜하고 犯罪環境 또한 날로 急變하여 各種 犯罪가 知能化, 機動化, 廣域化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犯罪는 過去와 같이 單純한 檢問檢索이나 探問搜查 等 原始的인 搜查方法 만으로는 犯人의 索出檢擧가 어렵고 실사 犯人을 檢擧하였다 하더라도 物的 證據를 確保하지 못하여 有罪判決을 받지 못하는 境遇가 많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搜查는 더욱 科學化되어야 하며 搜查裝備 또한 最新化되어야 한다.

科學搜查裝備란 搜查를 合理的이고 能率의으로 遂行하기 爲해 製作된 機器 裝具 施設 等으로 種類가 多樣하다.

參考로 最近 國內外에서 搜查에 活用되고 있는 科學搜查裝備를 紹介하면 機動裝備(搜查用 車輛 等) 通信裝備(無電機 휴대용 페이징 등) 監視裝備(赤外線 望遠鏡) 探知探索裝備(金屬探知器, 거짓말 探知器, 音聲分析器 等) 採證裝備(指紋採取器) 鑑識機資材(指紋擴大攝影器, 레이저指紋檢出機, 指紋自動 分類機) 등이 있다.

現在 우리 警察에서 使用하고 있는 裝備를 살펴보면 指紋採取器, 金屬探知器, 거짓말 探知器, 赤外線望遠鏡, 페이징 等 主로 基礎裝備로서 아직 先進國에 비해 不足함이 많다.

특히 科學搜查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指紋 自動 分類器, 휴대용 레이저指紋檢出機, 證據物錄畫送受信機, 夜間攝影望遠鏡 等 最新裝備를 우리 警察은 갖추지 못하고 있는 實情으로 하루 속히 確保되어야 할 것이다.

5. 搜查의 科學化

科學搜查란 犯人의 索出과 檢擧 또는 犯罪證據의 蒐集 分析 評價를 科學的 方法에 依據 遂行하는 搜查方法을 科學搜查라 하며 이에 反해 六感搜查란 客觀的 資料에 依한 判斷 以前에 搜查官 個人의 經驗的, 直觀的 判斷을 基礎로 搜查를 實施하는 方法을 말한다.

그러므로 六感搜查가 經驗과 感性에 바탕을 두는 것이라면 科學搜查는 合理性和

妥當性を 追求하는데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科學搜查가 이루어 지려면 化學 生理學, 醫學, 鑛物, 土壤學, 食品工學, 氣象學, 藥理學, 機械工學 等 實로 廣範圍한 學問이 應用되어야 하며 이러한 學問과 搜查警察의 合理的 搜查經驗 法則이 調和를 이룰 때 비로소 可能하다. 그러므로 科學搜查가 이루어 지려면 各種 科學 裝備의 現代化는 勿論 各種 搜查資料의 整備 等 科學搜查에 必要的 準備가 必要하다.

따라서 우리는 科學搜查를 뒷받침 해주고 있는 國立科學搜查研究所와 電子計算 所 및 治安本部 鑑識課의 機能을 더욱 擴大 強化하고 要員의 精銳化가 必要하며 市道單位에도 簡單한 犯罪資料를 分析하고 鑑定할 수 있는 小單位 科學搜查研究所의 設置가 必要하다.

6. 搜查警察의 士氣昂揚

搜查警察의 士氣低下는 곧 搜查能率과 直結된다. 이와 같은 現象은 非단 搜查 活動에만 局限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職場이든 構成員의 士氣가 低下되면 能率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參考로 搜查警察의 士氣低下 要因을 簡單히 살펴보면

- 業務量 過重으로 인한 피로의 累積
- 薄俸으로 인한 生活苦
- 努力과 奉仕에 비해 未洽한 社會的 評價
- 陳情 等으로 인한 屢번한 懲戒
- 對民部署라는 理由로 構成員을 不條理와 關聯시킴 評價
- 他部署에 비해 昇進하기 어려운 條件
- 退職後 老後對策 莫然

等이 重要的 士氣低下 要因으로 作用되고 있다.

따라서 搜查警察에 對한 士氣振作을 爲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搜查警察을 많이 增員하여 지나친 業務量으로부터 解放시켜 혹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 밖에

妥當性を 追求하는데 主眼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科學搜查가 이루어 지려면 化學 生理學, 醫學, 鑛物, 土壤學, 食品工學, 氣象學, 藥理學, 機械工學 等 實로 廣範圍한 學問이 應用되어야 하며 이러한 學問과 搜查警察의 合理的 搜查經驗 法則이 調和를 이룰 때 비로소 可能하다. 그러므로 科學搜查가 이루어 지려면 各種 科學 裝備의 現代化는 勿論 各種 搜查資料의 整備 等 科學搜查에 必要的 準備가 必要하다.

따라서 우리는 科學搜查를 뒷받침 해주고 있는 國立科學搜查研究所와 電子計算 所 및 治安本部 鑑識課의 機能을 더욱 擴大 強化하고 要員의 精銳化가 必要하며 市道單位에도 簡單한 犯罪資料를 分析하고 鑑定할 수 있는 小單位 科學搜查研究所의 設置가 必要하다.

6. 搜查警察의 士氣昂揚

搜查警察의 士氣低下는 곧 搜查能率과 直結된다. 이와 같은 現象은 非단 搜查 活動에만 局限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職場이든 構成員의 士氣가 低下되면 能率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參考로 搜查警察의 士氣低下 要因을 簡單히 살펴보면

- 業務量 過重으로 인한 피로의 累積
- 薄俸으로 인한 生活苦
- 努力과 奉仕에 비해 未洽한 社會的 評價
- 陳情 等으로 인한 屢번한 懲戒
- 對民部署라는 理由로 構成員을 不條理와 關聯시킴 評價
- 他部署에 비해 昇進하기 어려운 條件
- 退職後 老後對策 莫然

等이 重要的 士氣低下 要因으로 作用되고 있다.

따라서 搜查警察에 對한 士氣振作을 爲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搜查警察을 많이 增員하여 지나친 業務量으로부터 解放시켜 혹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 밖에

- 報酬의 現實化
- 充分한 搜查費 支給
- 時間外 勤務手當과 危險手當 支給
- 他勤務 動員 抑制
- 懲罰 보다 褒賞 爲主의 賞罰 等이 要請된다.

7. 住民協力 體制 構築

犯人을 索出 檢擧하고 公訴維持 資料를 確保하는 等の 搜查活動을 能率的으로 遂行하기 爲해서는 住民의 協助가 絶對 必要하다.

오늘날의 社會環境은 너무나도 複雜多岐하고 交通手段이 發達되어 犯人이 犯行을 하고 逃走하기도 容易할뿐 아니라 일단 民家에 스며들어 숨어버리면 住民의 協助없이 檢擧하기가 매우 어려운 實情이다. 그 좋은 例로 '88年 10月에 있었던 竊尊所 脫出事件은 犯人이 自動車를 타고 集團으로 全峽을 舞臺로 從橫無盡 날뛰고 治安當局은 數萬名의 警察官을 動員 곳곳에서 檢問을 實施하였지만 그 많은 車輛과 行人을 일일이 빠짐없이 檢問을 한다는 것은 事實上 不可能하였으며 또한 家家戶戶를 訪問 犯人檢擧를 企圖하였으나 그 또한 失敗하고 結局은 住民들의 申告의 依해 警察의 作戰으로 檢擧되었다.

이와 같이 오늘날과 같이 複雜한 社會에서는 犯行을 하고 逃走하거나 은신하기는 容易하나 檢擧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住民의 絶對的인 協助가 要請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警察이 住民으로부터 協助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 問題에 對하여는 두가지 側面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側面은 警察이 바른 姿勢로 諸般 警察業務를 遂行하여 住民들이 警察을 믿고 스스로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犯罪申告를 接受하였을 때에는 크고 작은 事件을 不問하고 迅速히 出動하여 犯人檢擧에 最善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事件을 處理하는 過程에서 絶對로 拷問, 暴行, 苛酷行爲 等を 하여서는

- 報酬의 現實化
- 充分한 搜查費 支給
- 時間外 勤務手當과 危險手當 支給
- 他勤務 動員 抑制
- 懲罰 보다 褒賞 爲主의 賞罰 等이 要請된다.

7. 住民協力 體制 構築

犯人을 索出 檢擧하고 公訴維持 資料를 確保하는 等の 搜查活動을 能率的으로 遂行하기 爲해서는 住民의 協助가 絶對 必要하다.

오늘날의 社會環境은 너무나도 複雜多岐하고 交通手段이 發達되어 犯人이 犯行을 하고 逃走하기도 容易할뿐 아니라 일단 民家에 스며들어 숨어버리면 住民의 協助없이 檢擧하기가 매우 어려운 實情이다. 그 좋은 例로 '88年 10月에 있었던 竊尊所 脫出事件은 犯人이 自動車를 타고 集團으로 全峽을 舞臺로 從橫無盡 날뛰고 治安當局은 數萬名의 警察官을 動員 곳곳에서 檢問을 實施하였지만 그 많은 車輛과 行人을 일일이 빠짐없이 檢問을 한다는 것은 事實上 不可能하였으며 또한 家家戶戶를 訪問 犯人檢擧를 企圖하였으나 그 또한 失敗하고 結局은 住民들의 申告의 依해 警察의 作戰으로 檢擧되었다.

이와 같이 오늘날과 같이 複雜한 社會에서는 犯行을 하고 逃走하거나 은신하기는 容易하나 檢擧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住民의 絶對的인 協助가 要請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警察이 住民으로부터 協助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 問題에 對하여는 두가지 側面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側面은 警察이 바른 姿勢로 諸般 警察業務를 遂行하여 住民들이 警察을 믿고 스스로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爲해서는

첫째, 犯罪申告를 接受하였을 때에는 크고 작은 事件을 不問하고 迅速히 出動하여 犯人檢擧에 最善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事件을 處理하는 過程에서 絶對로 拷問, 暴行, 苛酷行爲 等を 하여서는

안되며 恒常 親切하고 謙虛한 姿勢로 搜查에 臨하고

서째, 모든 事件은 絶大 公明正大하게 處理되어야 하며 偏과 不當한 事件處理는 搜查警察에 對한 가장 큰 不信要因이 될 것이다.

네째, 民願事件은 期間內 迅速히 處理해 주어야 하며 必要없이 參考人이나 被疑者 等を 長時間 待機시켜서는 안되며, 다섯째, 事件과 關聯해서는 어떠한 名分과 理由를 莫論하고 金品을 授受해서는 안된다.

以上은 搜查警察들이 住民들로부터 信賴를 받기 爲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될 事項들이다.

다른 한 側面은 警察이 國民으로부터 信賴를 獲得하기 爲해 以上에서 言及한 自體 體質改善 努力 以外에 積極的으로 住民 속에 과고들여 協助를 求하는 方法이다. 이를 爲해서는 住民들에게 犯罪의 豫防과 檢舉가 오늘날과 같이 複雜한 社會에서 는 警察만의 힘으로는 매우 어려우며 住民의 協助가 絶對 必要하다는 理由를 說明해 주고 犯罪豫防과 檢舉를 爲해 住民들이 協助할 事項들을 新聞, Radio, TV, 弘報冊子, 旣常會 等を 通하여 持續的으로 弘報하여야 한다.

그리고 住民協助와 關聯하여 꼭 考慮되어야 할 事項은 身邊의 危險을 부릅쓰고 犯人을 檢舉하거나 犯罪申告에 協助한 住民들에 對하여는 반드시 補償을 實施하여 警察과의 持續的인 協助體制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重要하다.

V. 結 語

오늘날 社會가 複雜해지고 民主化와 自律化 趨勢로 因해 各種 犯罪는 急激히 增加하고 있으며 이에 反해 社會與件은 犯人檢舉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現象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自由가 많이 保障되는 나라 일 수록 그리고 先進國 일 수록 더욱 甚하여 美國과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에 比해 犯罪檢舉率이 훨씬 떨어지고 있으며 뉴욕시와 같은 境遇는 헤가지면 外出하기 조차 두렵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마다 이와 같은 現象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안되며 恒常 親切하고 謙虛한 姿勢로 搜查에 臨하고

서째, 모든 事件은 絶大 公明正大하게 處理되어야 하며 偏과 不當한 事件處理는 搜查警察에 對한 가장 큰 不信要因이 될 것이다.

네째, 民願事件은 期間內 迅速히 處理해 주어야 하며 必要없이 參考人이나 被疑者 等を 長時間 待機시켜서는 안되며, 다섯째, 事件과 關聯해서는 어떠한 名分과 理由를 莫論하고 金品을 授受해서는 안된다.

以上은 搜查警察들이 住民들로부터 信賴를 받기 爲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될 事項들이다.

다른 한 側面은 警察이 國民으로부터 信賴를 獲得하기 爲해 以上에서 言及한 自體 體質改善 努力 以外에 積極的으로 住民 속에 과고들여 協助를 求하는 方法이다. 이를 爲해서는 住民들에게 犯罪의 豫防과 檢舉가 오늘날과 같이 複雜한 社會에서 는 警察만의 힘으로는 매우 어려우며 住民의 協助가 絶對 必要하다는 理由를 說明해 주고 犯罪豫防과 檢舉를 爲해 住民들이 協助할 事項들을 新聞, Radio, TV, 弘報冊子, 旣常會 等を 通하여 持續的으로 弘報하여야 한다.

그리고 住民協助와 關聯하여 꼭 考慮되어야 할 事項은 身邊의 危險을 부릅쓰고 犯人을 檢舉하거나 犯罪申告에 協助한 住民들에 對하여는 반드시 補償을 實施하여 警察과의 持續的인 協助體制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重要하다.

V. 結 語

오늘날 社會가 複雜해지고 民主化와 自律化 趨勢로 因해 各種 犯罪는 急激히 增加하고 있으며 이에 反해 社會與件은 犯人檢舉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現象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自由가 많이 保障되는 나라 일 수록 그리고 先進國 일 수록 더욱 甚하여 美國과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에 比해 犯罪檢舉率이 훨씬 떨어지고 있으며 뉴욕시와 같은 境遇는 해가지면 外出하기 조차 두렵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마다 이와 같은 現象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던 搜查能力을 提高시켜 犯罪의 恐怖로부터 벗어나 安心하고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은 온 國民의 關心事이며 또한 온 國民의 힘을 합쳐 함께 解決하여야 할 課題라고 생각된다. 既, 言及한 바와 같이 搜查의 能率을 提高시키기 爲해서는 搜查警察을 多少 增員한다든가 또는 搜查費를 좀 더 增額시켜주는 등의 消極的인 處方만으로는 根本的인 解決을 期待할 수 없다. 搜查의 能率을 提高시키기 爲해서는 搜查의 能率을 沮害하는 要因부터 하나 하나 除去해 나가야 한다.

첫째로는 政治事件이나 重要的 經濟事犯 등 高度의 專門知識을 必要로 하는 事件 以外的 輕微한 搜查事件은 檢事의 指揮없이 司法警察官이 獨自的으로 搜查할 수 있도록 權限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措置는 檢事側으로 볼 때는 過重한 業務에서 벗어나 公判準備에 充實히 專念할 수 있어 實體的 眞實 發見에 도움이 될 것이며 司法警察의 立場에서는 形式的인 檢事의 指揮에서 벗어나 所信있고 責任性 있는 搜查活動을 展開함으로써 搜查의 能率을 提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搜查警察을 增員하여 能力에 合當한 業務量을 配當함으로써 같은 事務所를 責任지고 完璧하게 遂行할 수 있도록 措置되어야 하며 司法警察의 資質을 높여 搜查의 能率을 卍함은 勿論 搜查過程에서 拷問, 暴行, 苛酷行爲 등 人權유린 行爲가 없도록 講究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搜查裝備를 現代化하여 날로 機動化, 廣域化, 知能化되어 가고 있는 犯罪에 能動的으로 對處해 나가야 하며, 네째로는, 過去와 같은 在來式 搜查方法에서 脫皮하여 搜查의 科學化를 促進해 나가야 한다. 이를 爲해서는 科學搜查裝備의 現代化는 勿論 各種 搜查資料의 科學的 管理, 搜查要員에 對한 專門教育, 技術要員의 確保 등이 持續的으로 推進되어야 한다.

다섯째는, 搜查費의 現實化이다. 既述한 바와 같이 搜查費는 搜查要員에 있어서는 자동차에 있어서의 휘발유와 같은 것이다. 自動車가 휘발유가 떨어지면 움직일 수 없듯이 搜查費가 떨어지면 搜查活動을 中止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事件搜查費나 刑事들의 活動費가 크게 不足한 實情이다.

이것째는 搜查警察의 士氣를 振作시켜야 한다. 組織員의 士氣가 低下되면 業務의 能率을 期待할 수 없고 目標達成이 어렵게 된다는 것은 基礎的인 常識에 屬한다. 그러나 우리 搜查警察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士氣低下 要因을 가지고 있음은 卽 指摘한 바와 같다.

일곱째 住民과의 協助體制를 強化해 나가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人口數가 많고 機動力이 풍부하며 高度로 發達된 複雜한 社會에서는 아무리 搜查警察이 많고 搜查方法이 科學化 되었다 하더라도 犯人을 檢舉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 까닭은 犯人들의 活動舞臺가 過去와 같이 한 地域에 局限된 것이 아니고 全國을 舞臺로 機動化 廣域化되어 가고 있고 高度로 知能化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犯人을 檢舉함에 있어 警察의 自體能力을 培養하는 것도 重要하지만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國民 하나 하나가 搜查要員이 되어 犯人을 監視하고 申告하고 檢舉하는데 協力하는 것이 더 重要하다. 結局은 搜查의 能率은 高度로 能率化된 警察과 國民의 協力が 調和를 이룰 때 極大化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以上 言及된 搜查 能率化 方案은 결코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질 수도 없고 또한 國民의 合意없이는 不可能하다. 關係 法令의 改正이 必要하고 必要한 科學搜查裝備의 導入이 必要하며 搜查要員들에 對한 長期間의 教育도 必要하다. 그리고 國民들의 搜查警察에 對한 認識이 바뀌고 搜查에 協助하여야 된다는 必要性을 온 國民이 함께 느껴야 한다. 이 모두가 國民의 合意없이는 不可能하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와 같은 難題들을 하나 하나 풀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 ① 金哲洙, 「憲法學概論」, 서울, 博英社, 1984.
- ② 金箕斗, 「新刑事訴訟法」, 서울, 博英社, 1984.
- ③ 金鐵顯, 「新刑事訴訟法」, 서울, 政文出版社, 1973.
- ④ 朴丁燮, 「警察搜查의 先進化를 爲한 搜查權 獨立에 關한 研究」(1986 論文)
- ⑤ 鄭箕燮, 「重要強力犯罪搜查의 問題點과 그 對策」(1984 論文)
- ⑥ 警大搜查幹部研修所, 「六感搜查와 科學搜查」(1987)
- ⑦ 警大搜查幹部研修所, 「新種犯罪의 現況과 對策」(1986)
- ⑧ 警大搜查幹部研修所, 「搜查裝備 運營改善方向」(1987)
- ⑨ 警大搜查幹部研修所, 「警察搜查와 人權」(1987)
- ⑩ 警大搜查幹部研修所, 「搜查警察의 專門化 方案」 1986.
- ⑪ 警大搜查幹部研修所, 「搜查警察의 資質向上 方案」 1985.
- ⑫ 警大搜查幹部研修所, 「搜查警察의 士氣昂揚 方案」 1987.
- ⑬ 治安本部 犯罪分析(1978 ~ 1987)
- ⑭ 法務部資料 第98輯 「各國의 司法警察制度」 1988
- ⑮ 司法警察官 職務規則(法務令)
- ⑯ 搜查要員任用規程(內務部令)
- ⑰ 慎鍾揆, 「刑事學」, 法文社, 1977.
- ⑱ 李三載, 科學搜查의 入門, 政文出版社, 1983.

註: 본 論文은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卒業論文으로 제출된 것임을 밝혀둡니다.